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5

# 광 주 지 방 법 원

## 판 결

| | |
|---|---|
| 사 건 | 2016구단1213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A |
| 피 고 | [redacted]군수 |
| 변 론 종 결 | 2017. 4. 27. |
| 판 결 선 고 | 2017. 5. 18. |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684,630원, 농어촌특별세 939,570원, 지방교육세 1,409,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 경위

가. [redacted]군 B 종교용지 4,737㎡, C 임야 1,815㎡, D 임야 26,2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재단법인 E 소유명의로 등기된 후 2015. 12. 30.자 증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5

를 원인으로 2016. 1. 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2016. 2. 15.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6. 3. 16.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나. F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피고에게 종교행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3. 16.자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해제를 이유로 말소되자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19,684,630원, 농어촌특별세 939,570원, 지방교육세 1,409,370원을 2016. 5. 4. F에게 납부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F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6. 7.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7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F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불교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5

선고 94다4556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9190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F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게 부여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사실, F는 1970. 6. 1.경 [redacted]종단에 등록된 사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사설 사찰이 아닌 [redacted]종단에 등록된 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F의 대표자이지만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원고가 속한 F가 과세처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있어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5

판사 정용석